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5호 2014년 10월 pp.163~193

한국세무학회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의 도입에 따른 영향 및 과세 대응 방안*

김수성** · 문성훈***

— <요 약> —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4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이하 ‘FATCA’라 함)이 시행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영주권 및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으로 인해 한국에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국적의 시민들이 비상에 걸린 것이다. FATCA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도를 더욱 강화한 법안이라 할 수 있는 바, 각 은행별 금융자산이 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의 FATCA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간 금융자산신고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전문가 양성을 통해 관련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고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의 개선 및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해외금융자산 정보 획득을 위한 과세관청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금융정보의 자동교환 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FATCA의 이행을 위해서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세제유인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과 우리나라의 양국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의 FATCA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물적설비와 인적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나라가 많은 바, 이에 대하여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FATCA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무적 차원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FBAR, FATCA, 정보제공, 역외탈루소득,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 본 연구는 2014년 7월부터 시행하는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대한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 mercury@tp.or.kr, 010-3243-1683, 주저자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mooncta@hallym.ac.kr, 010-9302-8453,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4년 6월 21일 1차수정일 2014년 9월 17일 2차수정일 201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14년 10월 18일

I. 서 론

최근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재산의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는 제도를 신설하거나 더욱 강화하여 자국의 국부유출을 억제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해외금융자산의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라 함)을 도입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부터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영주권 및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에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국적의 시민들이 비상에 걸린 것이다. FATCA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도를 더욱 강화한 법안이라 할 수 있는 바, 한국의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별 금융자산이 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자료를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소유주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지 여부를 실시해야 하며, FATCA가 시행되기 전부터 보유한 기존계좌의 경우 최장 2년 동안 전산실사와 수작업 실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임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은 FATCA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매년 연방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의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와 금융기관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연방 국세청에 이자 소득세 13.2%와 이자소득의 3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 5만 달러 이상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미국국적 소유자들은 FATCA가 시행되기 전인 6월 30일까지 금융기관 별로 금융자산을 5만 달러 이하로 낮추거나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하게 FATCA 규제를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재산 이외의 다른 유형의 자산으로 변경되더라도 언젠가는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연구를¹⁾ 확장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하는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도입에

1)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개요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가 대다수이며, 최근에는 산업별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논한 연구도 있다. 전자의 연구로는 박성후(2011)가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규제와 최근의 입법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이은미(2011)와 김유찬(2011)은 역외자산의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제도 및 국제 세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오윤·이진영(2012)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후자의 연구로는 장연호(2013)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 도입에 따른 손해보험업계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논하였다. 최근 고윤성·유영하(2014)이 연구가 있었는 바, 동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별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는 바,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로 해외의 국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FATCA 법 제정 이전의 국회논의 자료와 법률제정 이후 FATCA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도입후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연구(Marsan, 2010, 2011, 2012)와 FATCA를 포함한 높은 제재조치를 가진 해외자산과세제도에 관한 연구(Morse, 2012), 그리고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FATCA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간 금융자산신고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전문가 양성을 통해 관련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고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의 개선 및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조세의 세원을 파악하기 위한 세무전문가 양성을 통해 역외탈세 및 국제적 조세 회피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이에 대한 강화 및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대한 벌과금적 과세조치는 기존의 역외자산에 대한 과세권 행사 내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거주 한국인, 재미교포 및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내용 및 과세대응방안을 사전에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FATCA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FATCA 관련 제도는 금융정보의 자동교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에서 고립되지 않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FATCA의 협력은 필연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외금융자산 정보 획득을 위한 과세관청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의 자동교환 협정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FATCA의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세제유인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의 FATCA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물적설비와 인적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FATCA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미국세무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미국 세무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에도 적극 채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나라가 많다. 이에 대하여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양국간의 납세자 협력에 따른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Ⅱ장에서는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주요 내용 및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FATCA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자산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Grinberg, 2012)이 외에 미국의 해외자산과세제도와 FATCA제도에 관한 개관(Michel, 2013) 등이 있었다.

의 결과를 요약하고자 하였다.

II. FATCA의 주요 내용 및 제도의 이해

1.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주요 내용 및 현황

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개요

미국은 조세회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18일에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을 제정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²⁾ FATCA에 의하면 미국 납세자는 외국에 특정 금융자산을 일정 금액 이상 소유할 경우 소득세 정기신고시에 법정서식(From 8938)에 기재하여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라 함)에 신고해야 한다.

FATCA의 주요 내용은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기관의 금융계좌 및 미국 납세자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외국단체가 보유한 금융계좌를 IRS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 그 이듬해 4월 15일까지 금융계좌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FATCA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도 미국 납세자 등의 계좌정보를 IRS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됨에 따라 개인이 신고한 금액과 금융기관이 신고한 금액의 탈루가 없는 지를 상호점검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는 엄청난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FATCA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는 바, 해외금융계좌의 실태를 가장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국의 금융기관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법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기관에 막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해외 금융기관은 IRS의 FATCA 시스템에 미국 납세자 관련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세계기관식별 번호(Glo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GIIN')를 교부받아야 하며, FATCA법을 지켜야 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명단을 국세청 사이트에 별도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에 미국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외 금융기관의 GIIN를 확인하여 FATCA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그 원천징수된 금액은 별도의 조세조약 적용신청을 통해 환급받게 되므로 FATCA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³⁾

2) [http : //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oreign-Account-Tax-Compliance-Act-\(FATCA\)](http://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oreign-Account-Tax-Compliance-Act-(FATCA))

3) 가령, 국내에 소재해있는 ○○은행이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의 금융계좌를 FATCA법에 따라 신고하지

미국은 FATCA와 유사한 제도로써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인 FBAR(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하 ‘FBAR’이라 함)을 벤치마킹 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미국의 FBAR제도와 FATCA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

FBAR제도는 미국인이 직전연도 중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의 최대잔고가 어느 하루라도 잔고합계 총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년도 6월 30일까지 금융계좌에 대하여 미국 재무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⁴⁾ FBAR는 1970년에 금융기관을 통한 국내·외 자금의 유출·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 일명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 AML)에 따라 태동된 제도이다. 신고의무자의 범위에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영주권자 또는 183일 이상 거주자) 및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물론, 이러한 금융계좌의 처분권한을 가진 법인(파트너쉽, 신탁 포함)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해당되는 해외 금융계좌의 범위에는 미국 및 미국령 밖에 개설된 계좌로서 은행계좌, 뮤추얼펀드·위탁계좌·증권계좌·계좌명의인이 지분을 보유한 혼합펀드 계좌, 그밖에 해외 금융기관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는 계좌 등이 포함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등으로 FBAR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만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10만달러와 해당 계좌잔액의 50%를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⁵⁾

FBAR제도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제도로써 외국의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세법을 준수하여 자산을 자진신고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토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FBAR 자진신고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⁶⁾ 이와 같이 미국 FBAR는 신고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보다 신고대상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BAR 제도의 한계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해외계좌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여 해외자산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가 FATCA라고 할 수 있다.

않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 국세청은 미국에 소재해있는 ○○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의 30%를 원천징수 당하게 된다.

- 4)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Form 1040과 Schedule B를 신고하며, 금융계좌에 대하여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Form TD F90-22.1를 신고해야 한다.
- 5) 고의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5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6) 이러한 자진신고프로그램은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이라고 하며 ‘OVDP’라고 칭한다.

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미국 납세자에게 FBAR에 비하여 더 큰 부담을 주는 제도가 2010년 3월에 도입되었는데, FATCA제도가 이에 해당된다.⁷⁾ FATCA 제도는 기 언급한 FBAR 제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핵심내용은 해외금융기관에게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고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의 국내세법상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은 미국 재무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인과 미국인 소유 해외사업체의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해외금융기관이 위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내 소득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FBAR와 같이 미국인의 역외탈루소득을 적발하고자 하는 취지는 같으나, 보고의무 주체를 납세자가 아닌 금융기관 등에 지움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강화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FBAR가 미국 납세자의 신고를 통하여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FACTA는 해외금융기관 단계에서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하려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기관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중개인, 투자펀드(사모펀드 포함), 헤지펀드 및 개인투자회사 등도 포함된다. 보고 대상인 금융계좌는 은행계좌, 위탁계좌 및 관리계좌 또는 해외금융기관의 출자지분이나 채권지분을 포함한다. 다만, 계좌잔고 총액이 5만달러 이하인 저축성 예금은 제외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는 미국원천의 이자, 배당금, 임차료, 급여, 보험료, 연금 등의 고정적·정기적 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은행 또는 저축기관의 해외지사가 지급하는 이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총액 5만달러 이상의 해외자산(예금과 주식 및 기타 투자목적의 계약 포함)을 소유한 투자자는 관련 계좌 정보와 자산의 성격을 신고서에서 신고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무불이행을 통보받은 후 90일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된다.

FBAR의 경우 해외 거주중인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강제성이 없었다. 하지만 FATCA는 각 국가의 정부나 금융기관과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ATCA와 FBAR는 모두 미국인으로 하여금 해외자산의 신고를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근거법이나 신고시기 및 관할 관청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FBAR와 FATCA는 다음과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7) FATCA제도는 미국이 2010년 3월 18일 ‘고용창출및경제안정화법’(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HIRE Act)을 제정하고 Title V의 Offset Provision의 Subtitle A에 포함된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내용으로서 총 5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FBAR와 FATCA의 주요 내용

구 분	FBAR	FATCA	비 고
근거법	Bank Security Act, 1970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HIRE) Act, 2010.03.18	FATCA는 HIRE Act의 Chapter 4의 부속입법
기준금액	연중 한번이라도 \$10,000 초과시	연말 \$50,000 /연중 \$75,000 초과시(보험 : \$250,000)	부부합산 : \$100,000
보고대상	금융계좌 (은행, 증권, 보험)	해외금융자산 및 해외투자회사보유지분	—
신고양식	TD F 90-22.1	Form 8938, Form 8621	—
신고접수	U.S. Treasury(재무부)	IRS(국세청)	—
신고기간 연장	연장불가	연장가능	—
보고시기	6월 30일	4월 15일	FATCA는 소득세 신고와 연동함
제재조치	고의성 無 : \$10,000 이내 고의성 有 : Max (\$100,000, 총잔고 50%)	\$10,000 또는 높은 세율 부과 금융기관/기타법인 : 30% 원천징수	—

2. FATCA 도입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 내용

FATCA 도입에 따라 새로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은 서식 1040의 소득세 신고서식을 작성하며, 서식 FBAR과 서식 8398과 5471의 다양한 서식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FBAR에 의해서만 신고를 했으나 향후에는 FATCA 관련 서식을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FATCA로 인해 미국인 납세자에게 해외금융자산신고와 해외투자회사 지분보유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해외 금융기관은 \$50,000초과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국계좌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납세번호, 계좌번호, 금액)를 IRS에 매년 1회 신고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⁸⁾ 또한 비금융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10%초과의 지분 또는 주식자산을 보유한 미국인 소유주 또는 주주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납세번호, 금액)를 IRS에 매년 1회 신고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신고는 Model 1 IGA 또는 Model 2 IGA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보고되는 자료의 양식은 통일된 양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8) 신고대상 금융자산으로는 은행의 각종 예금성 자산, 증권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 등에 예치된 CMA, MMF,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각종 펀드상품, 그리고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등이 있다.

3.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진행 상황

미국의 FATCA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내용과 향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FATCA 입법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진행상황

일 자	내 용
2009. 2. 11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공화 양당 합의로 ‘고용창출및경제안정화법’(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HIRE Act) 입안
2009. 2. 24	상원, 기본 골자의 HIRE Act 통과
2009. 10. 27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Baucus, Kerry)과 하원의원(Rangel, Neal) 4인은 FATCA를 포함한 HIRE Act 발의
2010. 3. 17	미의원 통과, 표결 68-29
2010. 3. 18	오바마 대통령 서명
2013. 1. 17	최종 시행령(Final Regulations) 공포
2013. 11. 4	수정된 IGA 모델1 & 2 와 부록 공표
2013. 8. 19	IRS 포털등록 오픈
2014. 5. 5	6/2 공시 IRS FFI 리스트등록 최종일
2014. 6. 2	IRS의 첫FFI 리스트 공개
2014. 7. 1	신규계좌에 대한 고객확인 개시, FFI Agreement 발효
2014. 12. 31	Prima Facie FFIs에 대한 고객확인 완료
2015. 3. 15	1042 및 1042-S 서식보고 개시
2015. 3. 31	2014년 12월 31일까지 식별된 미국계좌에 대해 8966 서식보고 개시
2015. 12. 31	Limited Branch/ Limited FFI 허용기한 종료
2015. 6. 30	기존고객계좌에 대한 확인완료
2016. 3. 15	1042 및 1042-S 서식보고, NPFFI에 대한 지급내역 보고
2016. 3. 31	미국계좌에 대해 8966서식보고
2016. 8. 31	Responsible Officer에 의한 고객확인 완료 확인서 제출
2016. 6. 30	기타 기존고객 확인완료(원천징수 개시)
2016. 7. 1	특정자산 매각대금에 대한 FATCA 원천징수 개시
2017. 3. 15	1042 및 1042-S 서식 보고, NPFFI에 대한 지급내역 보고 종료
2017. 3. 31	미국계좌에 대해 8966 서식보고
2018. 6. 30	Responsible Officer에 의한 효과적 내부통제 확인서 제출

주) 고윤성외(2014년)의 자료를 수정하였으며, 삼정회계법인의 FATCA 설명 자료를 참조함.

III. FATCA의 도입에 따른 주요 영향 및 문제점

1. FATCA 도입시 이해관계자에게 부여되는 의무

가. 금융기관에 부여되는 의무

FATCA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로는 협약기관으로 등재된 금융기관이다. FATCA로 인한 협약기관은 외국금융기관(FFI⁹⁾)과 비금융외국법인(NFFE)으로 나눌 수 있으며, 참가FFI는 IRS와 협약(FFI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며, 협약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반면, Exempt-FFI는 IRS에 등록과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원천징수의무는 부여된다. 참가FFI는 IRS와 FFI협약을 체결하고, IRS가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후 국제중개기관고유번호(Glo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mber, GIIN)를 부여받게 되며, FFI의 효력은 GIIN이 발행되는 때에 발생한다. 참가FFI 중 이행간주금융기관(Deemed-Compliant FFI)과 면제되는 기관(Exempt Beneficial Owners FFI)은 FFI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FATCA에 따른 고객 분류는 다음과 같다. 크게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개인고객은 미국인과 비미국인으로 구분된다. 반면, 법인고객은 다소 복잡하다. 법인고객 역시 미국인과 비미국인으로 구분된다. 미국인중 특정미국인은 보고대상계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밖의 미국인은 제외된다. 비미국인은 금융기관과 일반법인으로 구분되는 데, 금융기관은 한국 금융기관 또는 FATCA 협정체결국 금융기관, 참여 외국금융기관(PFFI),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이행간주금융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이행간주금융기관은 보고대상 계좌가 아닌 반면, 비참여금융기관은 총지급액을 보고하여야 한다.¹⁰⁾ 능동적 일반법인 역시 보고대상 계좌가 아닌 반면, 수동적일반법인은 실질지배자가 미국인을 경우에만 보고대상 계좌에 해당된다.

IRS와 협약을 체결한 FFI는 협약내용에 명시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보고의무, 신고의무, 원천징수의무, 기타의 의무를 지게 된다. 2014년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FATCA의 요구사항을 충

9) FFI는 은행 등 예금수취 금융기관, 증권사 등 위탁금융기관, 투자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와 재무센터, 이행간주금융기관(Deemed-Compliant FFI), 소유자정보제공형 금융기관, 제한된 이익배당 금융기관, 비금융그룹법인, 외국정부, 외국정부의 부처 및 산하기관, 외국중앙은행, 특정퇴직펀드 등 면제되는 기관, 비참가FFI 등이 있다.

10) 비미국 금융기관(FFI,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으로서 다음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한국 금융기관 및 FATCA 협정체결국 금융기관으로 IGA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미 국세청(IRS)에 의하여 비참여금융기관으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참여 외국금융기관(Participating FFI)으로 IG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는 외국 정부 및 하부조직, 국제기구, 중앙은행과 퇴직연금을 말한다. 이행간주 금융기관은 등록형 이행간주 금융기관(현지 고객 기반 금융기관 등)으로 증명형 이행간주 금융기관(지역 은행 등)과 소유자 제출형 이행간주 금융기관을 말한다.

죽하기 금융기관에 부여되는 의무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FATCA 입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의무사항

단 계	구 분	내 용
1	실체분류 및 등록	금융기관 및 관련 실체가 FATCA 적용대상인지 여부 식별 및 IRS 등록
2	금융상품 분석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들이 FATCA 적용대상인지 여부 확정
3	기존고객 확인	기존고객에 대한 FATCA 고객실체 및 미국인 계좌와 여부 확인
4	신규고객 확인	신규고객에 대한 FATCA 고객실체 및 미국인 계좌와 여부 확인
5	보고	FATCA 보고내용의 취합 및 보고
6	컴플라이언스	책임있는 임원의 FATCA 의무사항 준수 모니터링 및 준수확인서 제출
7	원천징수	비협조자 및 NPPFI 등에 대한 30% 원천징수

주) 삼정회계법인의 FATCA 설명 자료를 참조함.

우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식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Calendar Year)의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1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TD F 90-22.1(FBAR) 양식에 의하여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 보고대상 계좌는 금융계좌 중에서 특정미국인¹¹⁾이 보유하거나, 특정미국인이 실질지배자인 수동적 일반법인(NFFE)가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계좌의 범위로는 예금계좌 또는 수탁계좌 등은 미국 보고대상 계좌에 포함되는 반면, 특정 퇴직 및 연금저축 계좌 등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특정 미국인이 실질지배자인 수동적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금융계좌가 있는 바, 실질 지배자(Controlling Persons)는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으로서 일반적으로 25%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동적 일반법인(Passive NFF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은 비미국법인으로서 외국금융기관(FFI)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일반법인은 능동적 일반법인(Active NFFE)과 수동적 일반법인(Passive NFFE)으로 구분하며, 능동적 일반법인(상장법인 등)은 실질지배자 확인이 불필요하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도관회사(SPC) 등

11) 특정미국인이라 ① 미국 시민권자 또는 개인거주자, ② 미국에서 설립되었거나 미국 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 또는 법인, ③ 다음에 해당하는 신탁(trust): (i) 미국 법원이 그 신탁의 관리 관련한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하여 명령 또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ii) 1인 이상의 미국인(U.S. Person)이 신탁의 거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미국인(U.S. Person)은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확장된 관계회사그룹 (Expanded Affiliated Group)의 일원인 법인, 3) 미국 정부 및 정부기구, 4)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 5) 면세기구, 퇴직연금, 6) 은행, 7) 부동산 투자 신탁, 8) 투자회사, 9) 공동투자펀드, 10) 조세면제 신탁 등, 11) 등록된 파생금융상품 딜러, 12) 중개인은 제외한다.

이 수동적 일반법인에 해당된다.

FBAR 보고와는 별도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식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매년 소득세 신고시에 전 세계의 모든 수입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에 법인의 경우에는 3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소득세 신고서식인 1040 양식의 경우 Schedule B Part III를 제출한다. 동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을 세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강력한 벌칙이 가해진다. 미국 보고대상 계좌 여부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미국 보고대상 계좌 여부¹²⁾

금융계좌 포함계좌	금융계좌 제외계좌
- 예금계좌(Depository Account) - 위탁계좌(Custodial Account) - 주식 또는 채권 지분 - 투자법인의 주식 또는 채권 지분 - 지주회사 또는 재무센터의 특정 주식 - 기타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채권지분 - 현금가치 보험계약¹³⁾ - 현금가치 5만 달러 이상 - 연금계약(Annuity Contract)	- 특정 저축계좌 - 퇴직 및 연금계좌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계좌를 포함한 특정 저축예금계좌 - 정기 생명보험계약(Term life insurance) - 유산계좌 - 특정 에스스로 계좌 - 법원명령 또는 판결문 관련 계좌 - 연금계약 - 즉시생명 연금계약 등

(1) 금융기관의 실사의무 부여

금융기관에게 부과되는 의무 중에서 가장 큰 의무는 고객확인 및 실사의무이다. 참가FFI는 협약 체결 후 고객에 대하여 미국계좌 여부에 대하여 확인 작업 및 이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계좌 식별 절차를 반영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2014년 6월 30일 이전 개설 계좌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야 한다.

미국계좌 식별 절차는 미국인 또는 미국인 소유 외국법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인 표시정보

12) 김정구 전게서, pp.93~100을 참조함.

13) 보험계약은 현금가치(cash value)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계좌에 해당되는바, 다음중 큰 금액으로 한다. 보험계약자가 중도해지 또는 계약 종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해약환급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차입할 수 있는 금액(약관 대출 가능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망보험금, 상해·재해보험금, 선납보험료(생명보험은 제외), 계약자 배당금은 현금가치에서 제외한다.

(US Indicia)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¹⁴⁾ 미국인 보유 계좌에 대한 실사 대상과 방법은 개인과 법인, 금융상품별 자산 보유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FATCA가 규정한 실사 대상 금융계좌로는 예금계좌, 위수탁계좌, 비상장 주식 또는 채권,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 등이며, 특정 퇴직 및 연금저축계좌, 정기 생명보험, FATCA의 적용이 면제되는 수익자가 보유한 계좌는 실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계좌와 법인계좌에 대한 실사 여부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개인계좌와 법인계좌에 대한 실사 여부

구분	개인계좌	법인계좌
기존 계좌	• US\$50,000 이하 예금계좌는 실사에서 제외 • US\$25,000 이하 보험 및 연금은 실사제외 • US\$50,000 이상 및 US\$100,000미만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의 실사를 함 • US\$250,000 이상 및 US \$1,000,000미만 보험계좌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의 실사를 함 • US\$100,000초과시 보다 강화된 높은 수준의 실사 검토절차 적용	• US\$250,000 이하 개별예금계좌는 실사에서 제외 • 총액기준으로 US \$1,000,000 이하 예금계좌는 실사에서 제외, 백만불 초과시 실사 실시
신규 계좌	• US\$50,000 이하 예금과 보험계좌는 실사에서 제외 • US\$50,000 초과 예금과 보험계좌는 실사 실시	• 법인계좌 개설시 FATCA규정에 따른 법인구분 • 법인의 신규계좌는 금액에 상관없이 실사함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계좌와 법인계좌 각각에 대하여 기존계좌와 신규계좌로 구분하여 실사를 하게 된다. 개인계좌에서 기존계좌는 예금의 경우 \$50,000 이하까지 실사가 면제되며, \$50,000 초과부터 \$1,000,000 이하까지는 보통 수준의 실사를 하며, \$1,000,000 초과부터는 높은 수준의 실사를 실시한다. 또한 보험 및 연금계약의 경우에는 현금가치를 기준으로 \$250,000 이하까지 실사가 면제되며, \$250,000 초과부터 \$1,000,000 이하까지는 보통수준의 실사를 하며 \$1,000,000 초과부터는 높은 수준의 실사를 한다. 반면, 신규계좌는 예금, 보험연금 모두 \$50,000 이하까지는 실사가 면제되며, \$50,000 초과부터 실사가 실시된다.

추가적으로 법인계좌에서 기존계좌는 개별계좌의 잔액이 \$250,000이고 각 계좌의 총액이 \$1,000,000 이하까지는 실사가 면제되나, 계좌의 총액이 \$1,000,000 초과할 때에는 실사를 하게 된다. 신규계좌는 모두 실사를 해야 하며 실사를 통해 파악된 미국인 계좌는 실사가 행해진 연도부터 시작하여 매년 연말잔고를 IRS로 신고하게 된다. 이때 계좌잔액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계

14) 미국인 표시정보는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미국 내 출생지, 미국 내 거주지 또는 우편주소, 미국주소를 가진 사람에 쓴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 우편보관주소 등을 말한다.

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계좌잔액이 \$100만을 초과하는 고액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확인절차를 적용하고 계좌기록 검토 이외에도 고객관계 담당자가 미국 납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계좌 관련 5년간 수집된 문서 검토를 해야 한다. 계좌종류별 확인 및 보고기한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계좌종류별 확인·보고기한

계좌구분		실소유자의 미국인여부 확인기한	미국인여부 확인시 보고대상 계좌잔액	계좌정보 韓國세청 보고기한	
신규계좌		'14.7.1일 이후 개설되는 계좌	계좌 개설시	'14년말 잔액 (매년말 잔액)	'15.7월까지 (이후 매년 7월까지)
기존 계좌	고액개인계좌	'14.6월 계좌잔액 100만\$ 초과	'15.6월까지	'14년말 잔액 (매년말 잔액)	'15.7월까지 (이후 매년 7월까지)
	소액개인계좌	'14.6월 계좌잔액 5만\$ 초과 100만\$ 이하	'16.6월까지	'15년말 잔액 (매년말 잔액)	'16.7월까지 (이후 매년 7월까지)
	단체계좌	'14.6월 계좌잔액 25만\$ 초과			

(2) 원천징수의무와 신고의무

미국 국세청과 해외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를 식별하여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내 금융기관이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30% 세율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는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014년 7월부터 미국 거주자 보고를 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금융자산 전체의 30%를 원천징수 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영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 국세청과 FFI 협약을 체결한 FATCA 참여 해외금융기관은 비참여 해외금융기관 및 비협조적 계좌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자산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30%의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FATCA에는 해외 계좌에 적용되는 공개 및 원천징수 제도와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FATCA는 ‘비금융 해외 기관’ 또는 ‘NFFE’라고 하는 해외 비금융 기관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FATCA는 해외 금융 자산이 5만 달러 이상인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납세 신고서에 특별 공개를 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건은 서식 TD F 90-22.1(또는 FBAR)에 추가하여 적용되며, 금융 계좌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 주식과 외국 fund에도 적용된다.

나.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의무

납세자는 1040의 서식에 의한 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기존에 요구되고 있는 FBAR 이외에 FATCA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소득세 이외에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5만불

이하이더라도 FBAR와 FATCA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FATCA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사항은 없다. 다만 개인은 이미 금융계좌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추가로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금융계좌를 신고할 경우 상호대조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의무 등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FATCA 신고 대상자로는 미국 세법상의 납세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납세자는 개인 납세자는 시민권자, 비시민권자중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 3년 동안 183일 미만 거주자,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타방 계약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 등은 FATCA 의무대상자에서 제외된다. FATCA의 신고대상자로 확정되면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신고의무는 Form 8938에 의한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와 Form 8621에 의한 해외투자회사 지분보유신고의 두 가지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FATCA이 시행되기 이전에 비하여 세부담의 증가가 초래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FBAR 제도 하에서는 해외 재산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세청이 이를 적발 할 길이 없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었지만, FATCA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3자(금융기관 등)를 통해 금융자산정보가 IRS로 통보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FBAR에 의하여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과거 6년 동안의 소득을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세와 기간 지연에 따른 각종 가산세(무신고 5%¹⁵⁾, 미납부 0.5%¹⁶⁾, 지연이자 약 3%)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IRS는 실무상 8년의 세무신고 여부를 확인하므로 가산세도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다. 과세당국에 부여되는 의무

과세당국에 부여되는 의무로는 FATCA 유형별 정부간 협약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⁷⁾. 2014년 3월 19일 체결한 양국간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협정방식은 전세계 국가들과 정부간 협약(IGA)을 체결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IGA 정보교환 방식은 크게 IGA Model 1과 IGA Model 2로 나누어지는 바, 우리나라 정부의 과세당국간의 정보교환 방식은 Model 1 IGA방식으로 체결되었다.

Model 1 IGA는 FFI 등이 고객에 대한 실사를 완료 후 보고대상 계좌정보를 자국 정부에 제출하면, 이 정보를 정부간 정보교환으로 IRS에 넘겨주게 된다.¹⁸⁾ Model 1 IGA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상대 국가에 속하는 모든 FFI는 이행간주금융기관(Deemed-Compliant FFI)의 자격

15) Late File Penalty(IRC 6651(a)(1)), monthly 5% up to 5 months, 미납부가산세 동시 부담시 0.5% 감액

16) Late Payment Penalty(IRC 6651(a)(2)), monthly 0.5% up to 50 months

17) 김정구, 『금융기관의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길라잡이』 p.22

18) 통상 과세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 정보 제공

이 부여되므로 모두 금융기관이 IRS와 협약을 체결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¹⁹⁾ 반면, Model 2 IGA는 1차로 FFI 등이 고객에 대한 실사를 완료 후 보고대상 계좌정보를 IRS에 직접 보고하게 되고, 2차로 미 국세청이 추가정보 필요시 해당국 정부에 요청하게 되며 해당국 정부는 FFI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령한 후 다시 IRS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²⁰⁾

이러한 방식에 따라 체결국간의 정보를 자동교환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국세청의 역할이 매우 크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하나의 정보로 정렬하여 각 개인과 법인의 계좌보유현황을 하나의 정보로 집합하여 이를 타국의 국세청에 정보를 전송하는 작업을 국세청이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누락된 정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과정에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이 진행되도록 이를 관리하고 협상에 충실히 임해야하는 의무가 있게 된다.

2. FATCA가 미치는 영향

FATCA제도의 실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국내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며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개별 이해당사자별로 예상되는 FATCA의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제IV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FATCA의 시행으로 인해 FFI 등은 다양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FATCA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이 소요된다. 만일 미국에서의 금융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활동을 위해서라도 국내 금융기관은 미국의 FATCA를 준용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라는 거대 금융시장을 배제하고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없으므로,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위하여 시스템을 최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도 FATCA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²¹⁾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FATCA에 따르면 미국인을 고객으로 보유한 은행 및 보험 등 국내 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금융재산을 파악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예치금 5만달

19) 현재까지 EU 주요 5개국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영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멕시코, 아일랜드, 덴마크도 차례로 IGA Model 1 방식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20) 통상 IRS로부터 요청 수령후 6개월 이내 정보 제공

21) 장연호. 2013.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 도입에 따른 손해보험업계의 대응 전략. 손해보험 통권 제534호(2013년 5월) pp.6-23, 손해보험협회

러 이상, 보험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25만달러 이상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FATCA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한 준비에 많은 납세자협력비용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고객확인 및 심사, 신고,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하고, 전체 고객 중에서 미국인 고객을 구별하고 별도 관리·보고하는 일련의 업무가 증가하게 된다. 미국 국세청에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 거주자의 해외계좌를 식별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한 FATCA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 계좌 개설 및 기존 계좌에 대한 실사업무가 수반되다.

또한 원천 징수의무와 정보 보고 등 국내 금융기관의 각 업무 부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 금융기관들은 2014년 7월에 미국 국세청에 국내 미국인들의 금융자산의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신고토록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FATCA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보완 및 인력의 확충, 그리고 금융계좌 신고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과 조직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동법에 따라 2013년 6월 30일까지 미국 국세청과 해외 금융기관(FFI :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를 식별하여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FATCA가 적용되는 해외 금융기관 분류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FATCA가 적용되는 해외 금융기관 분류

주요 업무	세부 업종
예금의 수취업무	일반은행, 저축은행, 저축기관, 신용협동조합, 주택금융조합
금융자산의 수탁업무	증권회사, 투자은행, 청산기관, 신탁회사, 수탁은행
투자(간접투자 포함)	뮤추얼펀드, 사모펀드, 모태펀드, 헤지펀드, 상장지수펀드
저축성 보험상품 판매	생명보험회사

자료 : FATCA 시행세칙

나.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1) 미국의 국적포기세 부과 대상자 증가 예상

FATCA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적용자가 과다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가 곤란한 상황 하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 보다는 FATCA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들을 철수하고 미국 이외의 조세피난처 및 과세가 되지 않는 제3국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도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로서 미국에서 소득 또는 재산을 축적하여 혜택을 누린 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 오기 전의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의 탈세 또는 재산도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08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국적 포기세(Expatriation Tax)’라는 독특한 세금을 신설하였다. 국적포기세는 일정한 조건의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가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날 경우 출국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소득(Capital Gain)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다.

2008년 6월 16일부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그 포기일(이하 편의상 ‘국적포기일’이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²²⁾ 납세의무자는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였던 영주권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이다. 다만,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국적포기일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사실상의 외국인은 제외한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12년 출국자의 경우 \$151,000)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재산가는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고소득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 납부액의 경우 매년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의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등 전 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적포기일 현재 전 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소득(Capital Gain)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10%~35%)을, 보유기간 1년 초과 재산은 우대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일반 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산별로 본인의 사망일 또는 재산의 양도일까지 과세를 연기할 수 있으나, 납세담보 (Security)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세 연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소득세 납부액의 경우 매년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의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등 전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적포기일 현재 전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Capital Gain을 산출한 후, Capital Gain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10%~35%)을, 보유기간 1년 초과 재산은 우대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일반 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산별로 본인의 사망일 또는 재산의 양도일까지 과세를 연기할 수 있으나, 납세담보(Security)를 제출

22) 국적포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기영(2013)의 비거주자 전환시 출국세 도입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것.

하여야 하고 과세 연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거주자는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및 국적 포기일을 기준으로 한 Form 8854 (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Form 8854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국부의 해외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한국내에 투자 중이거나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상당히 많은 편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국내 투자와 경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FATCA에 대해서 은행이나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한국내에 있는 미국인이 투자를 철회하고 다시 미국내로 자산을 환원시키는 경우가 급증하여 한국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²³⁾

각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 개설 시에 미국인 식별절차 적용 및 제반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선임하여 세원 노출에 따른 미국 국세청의 세금 부과를 회피하려는 고객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므로 미국인 고객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국내 거주 미국인이 국내의 계좌를 폐쇄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상황도 있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의 금융계좌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관리 지속 여부와 VIP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미국의 시민권자의 국내 자산관리의 변화 야기

FATCA 시행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의 국내 자산관리에 적잖은 변화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금융계좌에 국한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융계좌로 되어 있지 않은 금융상품 및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즉, FATCA를 시행함에 있어서 납세자는 과세제외 계좌나 다른 방법으로 자산증식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금융자산 이외의 부동산 시장에 활성화가 기대될 것이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옮기는 것은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일방국에 있기 때문에 과세되는 금액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는 한 타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쉽게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 거주자들은 FTTCA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건물이나 주택 등을 보유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조금이나마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ATCA의 보고를 피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보관하고자 할

23) 실제적인 통계자료는 확인할 수 없지만 FATCA가 도입되기 직전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된 투자자산을 철회하고 FATCA가 시행되지 않는 제3국으로의 투자를 고민하였음을 고객 자산가의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는 세무사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것이다. 한 금융기관에 5만불 이상 예치를 해 둔 시민권자라면 해당 자산에 대해서 미국 IRS(연방국세청)에 신고를 하던가 계좌를 분리해서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금융기관별로 5만불 이하로 예치할 가능성이 더욱 큰 이유로는 소액계좌보호를 각 금융기관이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이유에서 볼 때 미국인이 자신의 보유 금융자산을 5천만원 이하로 분산예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양국의 국세청간에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자동교환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국내의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시민권자 등은 국내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과거에 비하여 더욱 많은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다. 정책당국에 미치는 영향

FATCA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과세당국이라 할 수 있다. FATCA로 인한 정책(과세)당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미국에 FATCA 이행 협조를 할 경우 미국과 상호교환방식(Model 1A IGA)으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국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과세자료를 넘겨주게 되지만, IRS로부터 우리나라 역시 자국의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므로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풍부하고 넓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는 다른 세원의 해외 역외탈세의 세원을 과세당국에서는 포착하고 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발 및 인력의 확충도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FATC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협정의 내용이 최대한 우리나라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FATCA 제도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가. 양국의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

FATCA 제도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예상되고 있지만 FATCA의 발표 당시 FATCA가 해외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재지국의 금융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 충돌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FATCA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 미국이 세계경제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해외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하려는 목적만 놓고 본다면, 납세자의 자진신고와 해외 금융기관의 신고를 대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FATCA 제도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미국과 스위스의 예를 참조해보고자 한다. 최근 스위스 정부는 자국 은행의 미국인 조세회피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을 합의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근 미국과 스위스 정부는 해외계좌 신고제에 따른 역외 탈세 방지 협정 이행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 체결에 따라 FATCA에 명시된 스위스의 은행, 주식중개인,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미국인과 거래시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하도록 하고, 협정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이나 정보제출을 거부하는 예금주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30%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또한 스위스 금융기관은 거래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고객의 계좌나 펀드 내역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에 따라 FATCA이행 요구를 거부한 고객에 대해 계좌정보 등을 추적할 수 있다.²⁴⁾

이처럼 조세정보 자동협정은 양국간의 갈등을 더욱 심하게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기에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약 체결시에 이에 대하여 불평등하지 않게 협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새로운 역외탈세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최근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재산신고법을 제안하고 있다. 국외재산의 신고(제6조~제12조)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확대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 금융계좌, 부동산, 보석류, 법인의 출자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른 국외재산 신고제도는 현행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비교할 때 신고의무자와 신고기준금액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대상재산을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계좌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향후에 FATCA의 영향을 받아 제3의 국외에 보유한, ① 해외금융계좌, ②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③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④ 금 및 백금, ⑤ 보석류·골동품·예술품 및 회원권, ⑥ 지식재산권, ⑦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⑧ 법인의 출자지분 등에 대하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행예정인 FATCA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24) 2008년 5월 미국 국세청은 역외계좌를 이용하여 UBS가 미국 고객의 자산은닉 및 세금포탈을 조장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7월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명령장을 발부받아 UBS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UBS에게 요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UBS 은행이 자산을 은닉한 미국인 고객 4,500여명의 계좌정보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미국 국세청은 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 하였다. 또한 미국이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스위스 정부차원의 정보제공을 요구하자, UBS 은행계좌 보유자들은 은행 비밀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스위스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0년 1월 스위스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다른 역외탈세가 방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은 계좌로 국한되어 있어 계좌가 아닌 또 다른 자산으로 역외자산을 빼돌려 계좌가 아닌 자산으로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가령, 계좌로 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니 외국인의 제3자가 계좌로 되어 있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보유하거나, 서화·골동품으로 대체하거나 부동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근 외국인들이 이러한 법망을 피하고 또 다른 자산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에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부동산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나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서화 및 골동품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다보면 비상장 주식이나 서화 및 골동품 등에 대한 양도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FATCA 시행에 따른 실효성의 논란 문제 야기

FATCA 제도는 미국의 법규정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FATCA를 실행함에 있어서 적잖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FATCA는 국내은행의 여신을 제외하고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가 금융계좌의 보유기록을 실사하여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면 이를 통하여 미국과 한국간의 금융정보에 대한 자동교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법률체계가 다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많은 법률적 쟁점이 내포되어 있어 언제든지 양국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FATCA 제도 자체의 많은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하여 FATCA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많은 문제가 제도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가령, 6월 30일 현재 잔액 또는 가액이 5만 달러(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경우 25만달러) 이하인 기존 계좌 및 이후 연도말 기준으로 100만 달러를 초과하기 전에는 실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 5만달러 미만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했다가 이후 합산할 경우 사실상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금융기관별 예치잔액 또는 보유 금융자산의 가액 합산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사나 한 금융사 내에서도 업종이 다른 자회사에 분산 예치할 경우 실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점이 있다. 더불어 수동적 비금융법인의 경우 자연인인 실질지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금융사에서 파악해 내기는 사실상 곤란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기존 법인계좌의 실사시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법인 여부, 능동적 비금융법인 여부 등의 확인 절차가 불분명해 실제 보유계좌 실사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규정을 국내에 적용함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이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법적인 쟁점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다. 가령, 퇴직 또는 연금계좌의 경우 금융계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로 분류하고 있다. 이때 퇴직 및 연금계좌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²⁵⁾ 개인퇴직계좌로 규제를 받거나 퇴직 및 연금혜택(장애 또는 사망)을 제공하고, 등록하거나 규제를 받는 퇴직/연금플랜의 요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요건으로 납입금액이 총수입에서 차감하거나 면제를 받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투자수입에 대한 세금이 이연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에 제외되고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퇴직과 관련한 연금에 대하여 관련 조세당국에 매년 정보보고를 국내법에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적용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유계좌가 세제혜택 대상인지, 계좌에 대한 한국 과세당국에 대한 연간 정보보고가 요구되는지, 평생 납입금의 최고한도가 100만 달러로 제한되는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금융상품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일일이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란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유상품이 은행과 보험의 양면을 모두 지니고 있는 상품의 경우 5만 달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5만 달러의 한도를 적용하여야 할지가 불분명하다.

그밖에 국내의 외국계 은행들은 보관업무(Custody Business)와 관련하여 로컬 은행의 FATCA 실사 의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관업무인 커스터디 업무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자금 및 주식실물을 관리해주면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거나 주식의 매입·매도를 대행해주는 업무인데, HSBC, 한국씨티, 한국SC, 도이치뱅크 등 4대 외국계은행이 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은행에 실사의무를 지을 경우 글로벌 관리인과 실사의무가 중복될 수도 있으며, 업무의 복잡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계 은행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있다.

IV. FATCA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

이하에서는 FATCA 도입에 따른 시행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관리방안과 FATCA에 대한 과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금융기관의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 준비 철저

참여해외금융기관은 원천징수대리인과 비협조적 계좌보유자의 소득정보가 수록된 보고서를 2014년 9월 30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FATCA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 기존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미국 거주자 실체 및 이들이 보유한 예금, 위수탁계좌, 해외금융기관의 미국인 투자자 지분 및 채무증권, 비협조자 등의 계좌와 소득의 30% 원천징수 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은 각 소속협회를 주축으로 시행 일정

25) 김정구 전계서, p.98을 참조함.

내 FATCA 대응을 위한 운영모델을 수립하는 등 사업 착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FATCA 관련 법규분석 및 시스템 공통요건을 산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주요 은행들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FATCA 도입 후 금융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업무 매뉴얼, 직원교육용 매뉴얼 등 FATCA 법령 해설서와 업무해설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FATCA 도입 시에 금융기관의 신규 계좌 개설 및 기존 계좌 실사, 정보 미비 계좌 보완, 원천 징수 및 정보 보고 업무 등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FATCA 도입 시 금융기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FATCA 도입 시 금융기관 업무에 미치는 영향

업 무	요구 사항	금융기관 업무에 미치는 영향
신규 계좌 개설	- 미국인 표시정보(US Indicia) 파악 - 인별 합산 후, 미국인 소유계좌 분류	- 개인/기업 고객 분류 및 계좌 개설 절차 보완 - 인별 자산 합산 시스템 구축
기존 계좌 실사	- 미국인 표시정보 파악 - 전산자료 및 금융거래문서 검토 - 고객관리담당자 인터뷰	- 미국인 표시정보를 기존 시스템에 적용 - 기존 계좌에 대한 실사 절차 규정 - 고객별 실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정보 미비 계좌 보완	- 기존 계좌 실사 후, 미비 정보 보완 - 미비 정보 비 제공 고객을 비협조적 계좌보유자로 분류	- 정보 미비 계좌 보완 절차 규정 - 추가자료 요청 및 보완 관련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원천 징수	비참여금융기관 또는 비협조적계좌 보유자에 대한 원천징수	비협조적 계좌보유자 관리 시스템 및 원천징수시스템 구축
최종 정보 보고	미국인 소유 계좌 정보 및 비협조적 계좌보유자 정보 보고	- 美 국세청 보고양식 및 보고 절차 수립 - 국내 관련 당국에 대한 보고 절차 수립

자료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금력이 풍부한 국내 대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기타 투자업종은 관련 시스템 마련에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미진한 대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서 공통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국인의 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금융거래 이용자 정보 기반으로 미국 납세자 여부를 판단하는 고객식별시스템, 원천징수 시스템, 계좌정보 등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각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통일된 매뉴얼과 통일된 규격을 통하여 계좌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FATCA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써 엄청난 납세협력비용을 수반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은 법률·세무·금융과 전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는 등 이에 대한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 금융기관은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영업부서 및 직원에 대한 FATCA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FATCA는 미국 내 법률로, 국내 금융시장에 적용할 경우 관련된 국내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이 발생가능하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정부간에 FATCA에 관련한 최종 협약을 체결시에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쟁점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9>는 FATCA 적용 시 예상 쟁점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표 9> FATCA 적용 시 예상 쟁점 사항

쟁점 사항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FATCA
미국 국세청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제출 근거	국내법상 개인정보 수집범위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고객의 정보공개동의서 없이 외부 공개 불가)	미국 국세청이 규정한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공개 요구
미국 국내법 적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 폐쇄 근거	고객 동의 거부를 이유로 계좌 폐쇄 불가	고객 동의 거부 시 계좌 폐쇄도 가능
미국 국세청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근거	개인정보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없음	비협조적 계좌보유자와 비참여 해외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원천징수 요구

2. 해외금융자산 정보 획득을 위한 과세관청의 인프라 구축

해외금융자산 정보 획득을 위한 과세관청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과세당국 내에서의 국세청 내부 행정조직의 정비 및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의 FATCA 도입에 따른 대응을 위하여 FATCA 대응 전담 T/F를 발족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국세청은 해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도 역외탈세 담당인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먼저 국내외 정보수집 요원의 관리 및 확충이 필요하다.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된 미국인의 금융계좌를 취합하여 미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해외금융자산정보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적인 상호간의 정보교환의 차원에서 협력을 할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공개 정보의 검색 및 분석, 고객

자산가 등의 해외재산 은닉·소득탈루 혐의 정보의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 T/F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하고, 해외탈루소득분석 전담팀 및 국제조사팀을 설치·운영 하고 있는 바, 2014년 7월부터는 FATCA와 관련하여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에도 과세당국은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또한 교환된 금융정보를 통하여 정보수집 자료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세원의 발굴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3. 금융기관의 시스템 설비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마련

금융기관의 납세자 협력비용의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 비용 내지는 다양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해외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납세협력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미국으로부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공제받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FATCA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역으로 국내의 세수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FATCA와 유사한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통해 해외로부터 한국국적을 지닌 자의 납세자의 계좌정보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면 역외탈세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국내세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FATCA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차원으로 들어간 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FATCA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4. 불평등한 관계개선 유지 사후관리 필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계좌를 한국의 국세청이 통보 받을 수 있는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불평등 조약이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있는 바, 이것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다소 다르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해외금융기관이 미국인의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은 미국의 FATCA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는 크게 세가

지가 있다.

첫째, 양국은 신고대상 금액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자국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만 불을 초과할 경우에 신고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둘째, 양국은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 수위가 다르다. 미국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10%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셋째, 미국에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 신고제를 미국의 거주자 및 영주권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주자에 국한하고 있다. 역외자산 특히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의 FATCA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도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미국세무사(EA) 등 전문자격사의 활용에 대한 방안

우리나라 최일선에서 미국의 FATCA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로서는 미국세무사 EA(EA : Enrolled Agent, 이하 'EA'라 함)가 있다. EA는 미국 세무전문 자격사로서 미국변호사나 미국회계사처럼 세무분야의 전문가로서 FATCA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과세당국에서 해외세무자문사를 채용하여 각종 FATCA 관련 민원이나 해외 국가와의 FATCA 협약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 FATCA에 관한 문의가 국세청에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답변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인력 보강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 세무사는 미 연방 재무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TAX분야에서 그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납세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외국세무자문사'라고 칭한다. 자격증이 수여되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다른 자격증과의 비교적 위치에서 판단할 때에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세무사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EA를 '미국세리사'라 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무사와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EA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세법분야의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다.²⁶⁾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써 세무신고를 하는

26) 이처럼 미국세무사는 세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A는 미연방정부가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으로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Special Enrollment시험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적 자격증 중의 하나이다. 연방 재무부가 시행하는 이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로서 Internal Revenue Service(국세청)에 등록하여 사업면허를 받게 되는데 미국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것이다. 현재 총 3과목을 과목당 1년에 4번 SEE(세무사 시험)를 치게 되는데, 시험에 합격시 미연방 국세청(IRS)에 ENROLLED AGENT로 등록 후 바로 납세자 대리인으로서 세무보고, 세무계획, 세무 감사 등 업무를 통하여 개인

일이 기본적인 업무이고 더 나아가 주식회사의 설립과 청산, 상속재단의 설립과 운영 뿐 아니라 재정설계분야까지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²⁷⁾

최근 미국세무사가 한·미의 FTA 체결로 외국 세무자문사로서 한국 내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FATCA에 대한 의무를 국내에 소재해있는 외국세무자문사인 EA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한국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안 제6장의2 신설)에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국내에 있는 미국세무사 EA를 적극 활용하여 FATCA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미국 이외의 국가와의 FATCA 대응 방안 모색

FATCA 대응을 국내 금융기관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EU 등 해외 제도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2012년 7월에 FATCA와 유사하게 탈세 방지를 위한 은행 정보 교환에 이미 합의한 상태에 있다. 이들 국가들 역시 미국과 같이 타국 금융기관에 향후 자국민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운영모델, 전산시스템 요건, 내부통제 기준과 절차, 내부 업무별 영향도 등에 대한 사전 분석 작업을 실시하여 시나리오 플랜과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FATCA를 적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FATCA가 시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가운데에 향후 2~3년 내에 캐나다와의

고객 및 법인, 국가 기관으로 부터 국제 세법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국내외 세무 컨설팅 및 공인회계사, 변호사와 동등하게 전문직업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 27) 그 주요 업무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무보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서를 작성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 재산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득세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세무보고 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에 대한 세무보고도 대행해 주고 있다. 둘째로, 각 개인이나 법인의 세무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세무회계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한 세법적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최상의 활동방향이나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연금이나 보험가입, 부동산의 구입, 재산의 증여, 종업원, 그리고 사업형태의 결정 등에 있어서 세무와 관련한 계획의 수립은 고객에게 커다란 경제적,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셋째는 피감사의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무사로써 EA는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감사서류를 준비하고 감사공무원과 협의사항에 납세자를 대신한다. 또한 나중에 감사 내용에 의의가 있을 때 국세청내의 이의 신청 뿐 아니라 법원에 소송할 때도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넷째는 세무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세무회계사는 복잡한 세무문제에 가장 명료한 방법으로 해답을 제시한다. 세법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은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세무정보를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FATCA에 관한 협약 체결도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에 비하여 더욱 강력한 FATCA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캐나다에서 FATCA가 시행되면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2년 전부터 FATCA 문제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최미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에 대하여 준비하거나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은 불과 2013년 말부터 이다. 향후 미국처럼 캐나다에서도 캐나다의 국적을 소유한 캐나다 인들에게 미국과 유사한 FATCA가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 미국의 FATCA에 대한 도입의 교훈을 발판삼아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2014년 7월부터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바로 FATCA라는 제도로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초국가적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국내 5만달러 이상 예금과 25만달러 이상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미국내 투자중인 대상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향후 미국내 투자가 제한 될 수도 있다. 이러하다 보니 국내 금융기관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당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4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이 시행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영주권 및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초미의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 오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으로 인해 한국에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국적의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FATCA는 연방정부가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도를 더욱 강화한 법안이라 할 수 있는 바, 각 은행별 금융자산이 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4년 7월부터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조세의 세원을 파악하기 위한 세무전문가 양성을 통해 역외탈세 및 국제적 조세회피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이에 대한 강화 및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대한 별과금적 과세 조치는 기존의 역외자산에 대한 과세권 행사 내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거주 한국인, 재미교포 및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내용 및 과세대응방안을 사전에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인 FATCA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인 FATCA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FATCA 관련 제도는 금융정보의 자동교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에서 고립되지 않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FATCA의 협력은 필연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외금융자산 정보 획득을 위한 과세관청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번 금융정보의 자동교환 협정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FATCA의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는 납세협력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세제유인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의 FATCA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물적설비와 인적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FATCA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미국세무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미국 세무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에도 적극 채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나라가 많다. 이에 대하여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FATCA의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및 과세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후속연구에서는 FATCA의 시행에 따른 발생 가능한 세부적인 문제점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13.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사례. 국세청 안내책자
- 고운성 · 유영하. 2014. 미국의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FATCA)의 이해당사자별 영향 및 대응방안. 세무학연구 제31권 제1호 : 135 - 176
- 김기영. 2013. 비거주자 전환시 출국세 도입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5호. 한국세무학회
- 김유찬. 2011. 국제세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국제조세협회
- 김정구. 2013. 「금융기관의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 길라잡이」. 경제법률헌사
- 김태경. 2012. 「FATCA 시행세칙(안)과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Deloitte
- 김혜미. 2012. 「美 FATCA 시행과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박성후. 2011.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최근 입법동향」. 한국금융투자협회 Bulls review 제9호 : 25 - 32
- 서병호. 2012. 「미국 FATCA의 주요내용 및 국내 파급효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윤영선. 2010.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6집 제1호. 국제조세협회.
- 오 윤 · 이진영. 2012.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 이은미. 2011. “역외자산의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문제연구소 조세연구
- 장연호. 2013.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 도입에 따른 손해보험업계의 대응 전략. 손해보험 통권 제534호. 손해보험협회 : 6 - 23
- IRS web site contents, [http : //www.irs.gov/](http://www.irs.gov/)
- U.S. Department of Treasury web site contents, [http : //www.treasury.gov/Pages/default](http://www.treasury.gov/Pages/default)

The Response Measures and the Impact in Taxation to the Introduction of Foreign Accounts Tax Compliance Act(FATCA)

Su Sung Kim* · Seong-hoon Moon**

〈Abstract〉

A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on the introduction of Foreign Accounts Tax Compliance Act(FATCA) in July 2014, the act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As a result, U.S. citizen and a permanent resident, who has an account in Korea, faces an urgent attention. FATCA is introduc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enhance current report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further tax evasion using offshore accounts, which requires every bank-specific financial assets of more than \$ 50,000 must be reported. Since FATCA initiates in July 2014, it is expected to arrange the number of changes accordingly. Considering such changes,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ax authorities should be fully prepared in advance. In response, the cross-border financial asset reporting system must be smoothly implemented, which can only be achieved by professional development within the tax authorities providing effective communication of tax-related information. In additi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financial systems, and strengthening related profession.

In this study, the issues and impacts resulted in the introduction of FATCA is closely looked at, and the response in the taxation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a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thoroughly prepared for FATCA. Second,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of foreign financial asset, the proper infrastructure (protocols) needs to be built by the tax authorities. In accordance to the agreement on the Act., the tax authorities in Korea need to discover new method of imposing tax, and this must be utilized. Third, the financial institutions needs to provide utilities such as granting tax credits and incentives on investment for FATCA initiation. Fourth, inequality in terms of Tax needs to be improved. Fifth, the improvement on physical facilities and personnel is needed in order to smoothly perform current FATCA, Sixth, besides the States, along with other countries facing FATCA, it is necessary to prepare upcoming events. Finally, the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the tax authorities must not hesitate to strengthen specific protocols in the response to the implementation of FATCA, and to maintain on going efforts.

〈Key words〉 FBAR, FATCA, Offshore Tax Evasion,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The Korean Teachers Pension, Ph.D of Science in Taxation,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rresponding Author